

부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312001(본소), 2020가단31863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주식양도대금]

---

##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임호택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변론 종결** 2021. 3. 10.

**판결 선고** 2021. 5. 26.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64,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3,407,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한정면허버스 7대 및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등 소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여, 그 양수 방법으로 2017. 9. 15.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D, E, F과 사이에, 위 D, E, F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양수대금 6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상 "갑"은 D, E, F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3조(양도대금) 을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육억삼천만 원(W63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그 중 금 일억 원(W100,000,000)은 운송부대시설의 평가액으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를 양수하여 그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한정면허버스 7대 및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등 소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여, 그 양도 방법으로 2019. 1. 2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양도대금 1,00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갑은 2019년 2월 25.일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1. 발행회사 : G 주식회사 한정면허
2. 종류 : 보통주식
3. 액면금 : 5,000원
4. 주식수 : 10,000주
5. 물건 : 한정면허(버스) 7대 및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제3조(양도대금) 을은 2019년 2월 25.일까지 주식양도 대금으로 금 일십억

원(₩1,0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기일과 지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계약금 : 금 삼억 원정(₩300,000,000)은 2019년 1월 24.일에 지급한다.

(2) 잔금 : 금 칠억 원정(₩700,000,000)을 2019년 2월 25.일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9. 1. 24.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700,000,000원에서 소외 회사의 미회수 채권, 미지급 채무 및 예금 등을 정산한 후 2019. 2. 25.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합의각서 중 "양도인" 또는 "갑"은 피고를, "양수인"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8. 양도인이 전 사주 E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1억 원(₩100,000,000)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전 사주에게 지급하고 어음금액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산한다. 단, 이때 지급일은 갑과 전 소유자간에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중 4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의 ① 통장잔액, ② 선수수익, ③ 미수수익, ④ 선급비용, ⑤ 미지급비용, ⑥ 현금시재의 각 항목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한 끝에 최종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양도대금을 정산하였는데, 별지 표 중 선급비용 항목 기재 79,208,214원에는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 71,084,337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1,000,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한정면허버스 7대의 대금을 900,000,000원,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의 대금을 100,000,000원(다만, 차후에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위 양도대금에서 213,935,492원을 제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비용(위 선급비용 항목 중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으로 71,084,337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위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비용을 중복 산정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정산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제 양도대금을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계산하면,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최초의 양도대금 900,000,000원(소외 회사의 한정면허버스 7대의 대금)에서 정산금 213,935,492원을 공제한 686,064,508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7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93,935,492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양도대금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93,407,49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한정면허버스 7대의 대금과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의 대금으로 구분함이 없이 1,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정산과정에서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한 것은 이중계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으로 지급받은 71,084,337원은 부당이득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1,084,33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1,000,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대금일 뿐,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에 대한 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1,000,000,000원의 양도대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바,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과정 및 그 이후의 세 차례에 걸친

정산 과정에 참여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213,935,492원을 공제한 786,064,508원을 양도대금으로 하기로 정산을 마친 이상, 위 정산된 양도대금에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비용이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산된 양도대금 786,064,508원 중 7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6,064,5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2조 제5호에 "물건 : 한정면허(버스) 7대 및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 양도대금이 1,000,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에는 위 1,000,000,000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한정면허버스 7대의 대금과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의 대금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한정면허버스 7대의 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의 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합계액인 1,000,000,000원을 위 양도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당초 D, E, F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양수대금을 63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운송부대시설 대금, 즉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의 대금으로 하되 이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액면금이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각서 제8조에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하고 어음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기로 한 어음이 바로 피고가 E 등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 운송부대시설 대금으로 지급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위 약속어음인바,

위와 같은 합의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외에 위 약속어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항목인 선급비용에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으로 71,084,337원을 산정하는 내용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피고는 정산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 수차례 상호검증을 하여 세 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결과에 대하여 확인의 의미로 원고의 실무자인 I과 피고가 각 서명 내지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양도대금 1,0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이라거나 위 양도대금 1,000,000,000원에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산항목인 선급비용에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으로 71,084,337원을 포함시킨 것이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을 중복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중복 계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이 중복 계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예비적 주장을 포함한다)는 이유 없다.

####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 1,000,000,000원 및 위 금액에서 213,935,492원을 공제하기로 한 정산결과에 중복 계산된 잘못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확정된 양도대금은 786,064,508원(= 1,000,000,000원 - 213,935,492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7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6,064,508원(= 786,064,508원 -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경수

별지